

瑞山市統·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8. 9. 16

3. 提案理由

- 작은 지방정부 실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구 5천명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(오산동)을 석남동으로 통폐합 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통·반설치 조례중 석남동란의 “양대4통” 다음에 “오남동(1,2,3,4통), 장동(1,2통), 덕지천동”을 두고 “오산동”란을 삭제【별표 2】

5. 檢討意見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행정동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

- 서산시 기구개편 계획에 의거 오산동이 석남동으로 통폐합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므로 인하여 서산시 통·반설치 조례도 개정이 병행되어야 하는 안건으로
-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